

7월 25일 건축허가·신고 공사부터 가스배관 벽체, 바닥 매립 적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스배관은 벽체 및 바닥에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25일 이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편집자 주]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3)바④의 규정은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의 설치가 7월 25일 이후 가스배관 시공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건축공사의 발주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후 바로 발주하여 건축공사 2년 후에 가스시설을 시공하고 있는 바, 2013년 7월 25일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세대에 한해서 배관이 벽이나 바닥에 매립 시에는 가스의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또는 다기능 가스안

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어떤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조문은 건설공사가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의 매립 설치를 선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종전과 같이 가스배관을 노출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질의 사항과 같이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내 매몰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가스배관 설계도에 의한 관련 기준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며 배관공사 시공과정과 준공 후에도 관련기준 적합성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3.7.25.일자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가스배관의 매몰 시공 분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